

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0. 20.

제 출 자 : 이범연의원의외 5인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,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 및 대상(안 제4조)
 -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
- 지원신청 등(안 제5조)
 - 보험료 추가 지원은 해당 보험사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환수(안 제6조)
 -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
- 사후관리(안 제7조)
 - 군수는 해마다 사업수행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의 실적 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- 집행기관 의견수렴

- 기간 : 2016. 10. 5 ~ 10. 12

-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- 입법예고

- 기간 : 2016. 10. 24 ~ 10. 31

-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,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농업인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영농종사자를 말한다.
2. “보험사업자”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(이하 “안전보험”이라 한다)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지원 및 대상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보험료 추가 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보험료 추가지원은 해당 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.

제6조(환수) 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7조(사후관리)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추가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 청구서

1. 청구액 : ()
- 2.사업명 : 년도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사업
- 3.사업내용 :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인부담분 지원
- 4.청구내역

(단위 : 명,원)

구	분	주계약 보험료		청구액 (군비지원금)
		국고보조금	농업인부담금	
일반인형	개인형	1형		
		2형		
		3형		
	부부형	1형		
		2형		
		3형		
장애인형	개인형			

- 5.사업기간 : 20 . . ~ 20 . .

위와 같이 「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 1부. 끝.

년 월 일

청구인 :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장(인)

평 창 군 수 귀 하

[별지 제2호서식]

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

연번	보험증권 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	가입 일자	가입금액(원)			비고
						계	국고 보조금	농업인 부담금	

확인자 :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장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일부 있음(5천만원 미만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농업인안전보험료의 추가지원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범연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6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